

기 안 용 지

관류기호 분서번호	224414 116	(전화번호 가나 6193)	건결유경 조항 결 조항
처리기간	시 기		
시행일자			
보증년월	28 27		
보조기관	제2부시장		법무담당관 (의사안심사)
	도시계획국장		시민과장
	도시계획과장		주요계획과장
기안책임자	권안	가.2.6. 전상화	조
심수참	각안참조	발신	송
제목	서울 도시계획시설(시장)결정및 지적승인		

제 1 안

수신 내 부 결 재

1. 산업국 상정과정으로부터 별첨과 같이 당시관내 유허가 유사소매시장 현대화 계획(재래시장 개량방질)에 의해 도시계획시설(시장)결정 요청이 있어

2. 본관당시제1차(가.1.21)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던바 별첨 심의안맞회의결과 같이 가결된 2개지사항 중 우선 시류 보완된 1개지사항에 대하여 시설결정 하도록 하고

3.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주위에 의한 시설결정과 지적승인 절차는 동법제10조에 의해 건설부 고시제 1-3호(23.4.4.)로 당시에 권한 위임된 시안 이므로 별첨과 같이 이를 결정 고시 하고 다음과 같이 시행 하리니 하오나 결재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

가 시설 조서

1680

시·선명	위 치	면적	비 고
시 장	동대문구 용두동 231-1	1,260㎡	용두시장
"	성동구 신당동 217-91	2,138"	홍인상가
"	" 행암동 191-9 부근	3,263"	한양시장
"	" 천호동 420-1 부근	1,817"	광호 "
"	도봉구 수유동 119-5 부근	4,626"	삼문 "
"	" 미아동 701-3	2,600"	동북 "
"	마포구 염리동 36-248 부근	1,200"	대흥 "
"	서대문구 대포동 181-48 부근	2,319"	연지 "
"	" 불광동 310-232 부근	1,150"	연서 "
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

정부 심의안 및 회의록, 도면



제 2 안 " 도시안 "

서울특별시 도시 계획

도시계획시설 (시장) 결정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시장)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와 건설부 고시 제 103호(7.4.4)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
2. 관계당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(출장소) 시민 복지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

고시안심사 1975.2.7	제 975-2
심사자 방제계/방부6582	서울특별시
전 결	시설 조서

시·선명	위 치	면적	비 고
시 장	동대문구 용두동 231-1	1,260㎡	
"	성동구 신당동 217-91	2,138"	

U201-1-43A (2-2)
1972. 12. 29 승인

서울특별시

196.4x286.4인 화용지 (2공) 60㎡/가
소 노 비 기 용 권 (92-04-6)

제 5 안

수신 수신처장로
제목 등 기

발신 : 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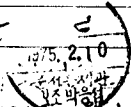
1. 귀부(홍삼소) 관내 도시계획시설(시장) 결정이
별첨 고시문사본 및 도면 등기와 같이 고시 되었기 통보 하
관계 도시를 정리 한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
보이게 하고 대지증명 발급을 제반 업무에 착수했기
바람

전부 고시문사본 및 도면 각 1부

수신처 : 1. 동대문구청장, 성동구청장, 전호구청
소감, 도봉구청장, 마포구청장,
은평구청장 소감.

제 6 안

수신 상점 과장



발신 : 과장

1. 당시 관내 유하(유사) 소매시장 현대화 계획
(재래시장 개량 방침)에 의거 별첨과 같이 도시계획
시설(시장) 결정 및 지적승인이 고시 되었음을 통보
하오니 사წყ시행에 반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

2.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33조 1항 8목에 의하여
소매시장으로서 대지면적이 1000㎡ 이하의 경우에는
도시계획시설(시장) 결정 할수 없음을 천명 하오니 이점
유념 하시기 바랍니다

전부 고시문사본 및 도면 각 1부

제 7 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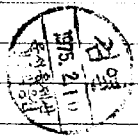
수신 구획정리 과장

발신 : 과장

제목 등 기

i. 상용주 권호용 420-1 부근에 대하여 뒤
계략시성(시장) 계획 및 지적승인이 별첨 고시문사본 맞으면
포시와 같이 고시 되었음을 통보하니 업무 착오 없기
바랍니다.

첨부 고시문사본 맞으면 각 1부 끝





결의번호	
결의변경일	95. 1. 21
	제 1 회

결의사항

시장용지시설결정

2.10
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의안건

제출자	서울특별시
제출변경일	95. 1. 21

- 610

10. 시장용지 시설 결정

< 의결주문 >

시장용지 시설결정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

가. 시장시설결정

(1) 신설시장

신 청 지	면 적	지 목	도시계획사 항	신 청 인
영등포구 여의도동 1~892 (7)	503 평	대	주거지역	삼익기업 주식회사
영등포구 여의도동 1~892 (8)	499 평	대	주거지역	삼익기업 주식회사

(2) 무허가시장 양성화

번호	규정별	시 장 명	신 청 인	신 청면적 (평)	비 고
1	종 도	세운상가가동	김 경 호	520 평	

번호	구분별	시장명	신제품	신제품면적 (평)	비고
2	중 구	남대문 시장	이 근 택	7,616 ²	1,804.2 ² (특장분) 5,812 (거취가)
3	.	동쪽연쇄상가	김 대 성	191 ²	
4	.	디스카우퍼스토어 (시립노)	정 준 채	237	
5	.	자우시장	조 성 기	452 ²	
6	.	침계상가	조 종 학	414 ²	
7	동대문	응두시장	권 필	382 ²	
8	서대문	봉재시장	최 기 승	905	
9	은 평	면지시장	이 정 남	650	
10	.	면서시장	전 의 용	490	
11	성 들	한양시장	김 연 관	989	
12	.	성일시장	손 환 식	300	
13	.	통년상가	이 준	648	

1687

14	천포	광포시장	임정운	563	
15	마포	대봉시장	아음식	386	
16	흥산	보광시장	박인관	497	
17	.	루암시장	전로갑	240 ¹	
18	,	흥문시장	남국선	357 ²	
19	노봉	쌍문시장	이은권	1,402 ²	
20	*	동북시장	박동길	818	
21	영등포	시흥연쇄상가	최일남	984 ²	
22	"	시흥협동상가	강익수	1,022	
23	,	대림상가	이도삼외8	633	
24	"	영등포상가	박병환	321	
25	.	삼구시장	이정훈	385	
26	.	영등포노리시장	이영철	437 ¹	200 명 추기포함
27	,	남서울상가	이호택	894	
28	.	영신상가	유장훈	662 ¹	

나. 사유

- (1) 신설시장은 아파트 ~~각종~~ ~~이용~~ ~~인근~~ 주민을 위
한 시장을 개설코자 하는 것임
- (2) 기존 무리마 시장은 무리마시장 양형화 방침에 의
거 편입조정코자 하려는 것임

(별첨자료 참조)

경안 카결 통과

회 의 록

1. 일시 : 75. 1. 21 16:30
 2. 장소 : 도시계획과장실
 3. 안건 : 1 도시계획도로 (대2-24) 일부변경
2 도시계획광장 일부변경 (추가)
3 도시계획시설 (노외주차장)결정
4 도시계획시설 (소로) 일부변경
5 도시계획 고도지구 일부변경
6 도시계획공원해제 (대지)
7 도시계획공원 및 용지지구 일부변경
8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시설결정
9 학교용지 시설결정
10 시장용지 시설결정
11 도시계획도로 (저개발지역 임지구) 신설
4. 참석위원

부위원장 손정복 처장 최영

5 기타 감사자

권수 (초기계획과장) 서기 (종합계획계장)

이근호계장 김재개발계장 기혁계장 (대)

정진과장 심정계장 주석계장 그과장

6 기 록

이 응 선

중대 검토 확인한후 다음 회의에서

심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

위원 활동 : 제안동의

간 사 : 그럼 본건은 다음 회의에서 재심의 기로
되었습니다

안건 10 : 시장용지 시설 결정

기) 여의도동 1-292

간 사 : 제안설명 (생략)

주요위원 : 건물미관 관계등에 대하여는

간 사 : 별도 미관지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

위원 활동 : 제안 동의

나 무허가시장 양정화 (종 29 개소)

간 사 : 제안설명 (생략)

무허가 시장 양정화에 따른 관계관 의견

처리 방침에 대한 현황설명 (생략)

이관위원 : 종 29 개소를 하나 하나 심의 한다면

///

시각관계도 있고하니 그간 실무자 및 관계
 직원과 사전 협의 그리고 이미 양성과
 변경에 대한 지침을 선행하니 그중 도시계획
 법이나 시설법과 연계 검토한 결과 문제
 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간만 심의위로하자
 한 사 : 2개소중 2개소는 현재 구획정리사업지구내
 있어서 사업완 토시엔 다루기로 했습니다

심정파장(비): 현실위에 따른 문제점 및 현황설명
 (생략)

주승권위원 : 확고파는 500㎡ 시장파는 500㎡ 에 지속은
 있습니다

심정파장(비): 지속되는 것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협의
 하여 처리코자 합니다

주승권위원 : 별도 협의우 지상권있는것에 대하여는 현실파
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

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

간 사 : 그렇습니다

김준석위원 : 2개안건이 보류는 어디 어디입니까

간 사 : 2/번째 시흥편액상가와 22번째 시흥협동조합
가조

이천원위원 : 시라비 공익성에 맞아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
기타 현상은 없어야 들줄이다 참고로 시장
국에서 처리지침에 나타난바와 같이 산악지
조건부 승인이 되어서 일찍이 구체화 되는
감독이 있어야 들줄이다

간 사 : 협정시설을 갖추도록 조건부 지시에 의해 관련
시설을 갖춘후에야 허가가 되는거죠

상정파장(대) : 협정실명 (실적)

부거원장 : 협정시설이란

상정파장(대) : 소방도로 주차장등 기준시설이죠

김중삼상임위원 : 현재로서는 시설개수명령을 할수있는거죠

그러므로 우선 현실화시켜 법정시설을 명명
하후 그전부로 치카 한다는 것입니다

부위원장 : 우리로서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심의
할뿐이고 행정명령에 따라서는 해당부서
에서 담당해야 하니까 별 문제점이 없다
면 현실화시켜줄이 가하지 않나

주무관 : 기존 건물 기준으로 보면 가장 근의 거리가
3000 확보되는 3000로 되어 있는데 그걸
무시할수는 없지 않나

신 사 : 그 기준이란 당사가 심의기준을 만들어
놓은것이 법으로 정해진 기준과는
없습니다

나상기위원 : 현실화시켜자는 당국의 방침에 대하여는
이해가 가나 우선 현실화시켜줄성우 가장
문제가 되는것이 주차시설 같은 것같습니다

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강력한 조치가
취해 서야 할것이다

상정 피상 (여) : 현행 화시키종과 동시 법상 사실을 갖출수
있도록 행정조치를 하여 명분이 이행된 후에
취지 해주려는 것입니다

비현상 동 : 재민 동의

한신 // : 노기계획도로 (재개발지구) 중등

상정 피상 : 현행 설명선택

나경서위원 : 현행도 사람이 다들 알고있는 것으로 보는데

한 : 서로히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등 수계상

보상을 주어 우선 도로를 확보 하려한 것이요

주주위원 : 간제각원 종합 개서할 계획과 관련 현행 현행

할 할게 아니냐

한 : 종합기문계획에든 변함이 있는지

간 사 : 선거 종합계획은 되어 있으나 다만 현 시인회
관 세입에 따른 사업시행의 우선으로 불가
피할 것이지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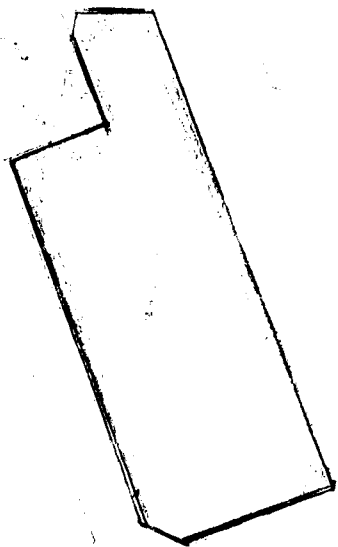
강단주 위원 현 시인회관 건립부지와 전화국 사이 약 1km

간 사 : 전락합니다

위원장 등 : 제안합니다

부위원장 : 이상으로 25년도 제1차회기를 마치겠습니다

- 회 회 -



1698



大正求積圖



大正求積表

구분	길이	높이	면적
1	35.8	9.2	302.56
2	35.8	9.5	312.55
3	32.2	5.9	19.50
4	8.8	5.4	15.70
합계			648.35
			648.35

築

大正求積圖



大正求積表

구분	길이	높이	면적
1	68.8	8.8	302.7
2	68.8	8.8	302.7
합계			605.4
			605.4

지 원 도

S=112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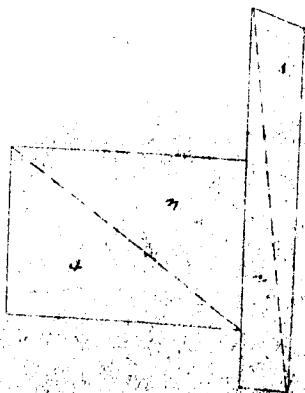
한양시경현판도

S=11200

구 적 도

S=11200

구 적 표



구 적	면 적	비	비
1	100	100	100
2	100	100	100
3	100	100	1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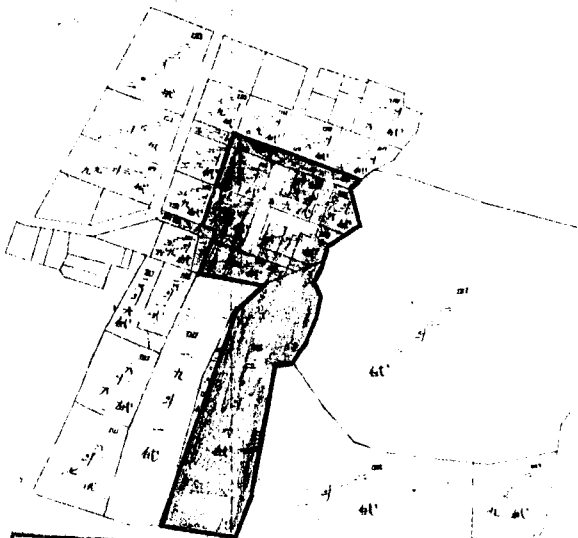
- 100
- 100
- 100
- 100
- 100

三友測量所
 1911年
 11月

광호시장

이

서기一九七〇년 拾월 拾일



지정사항사본은

대한지적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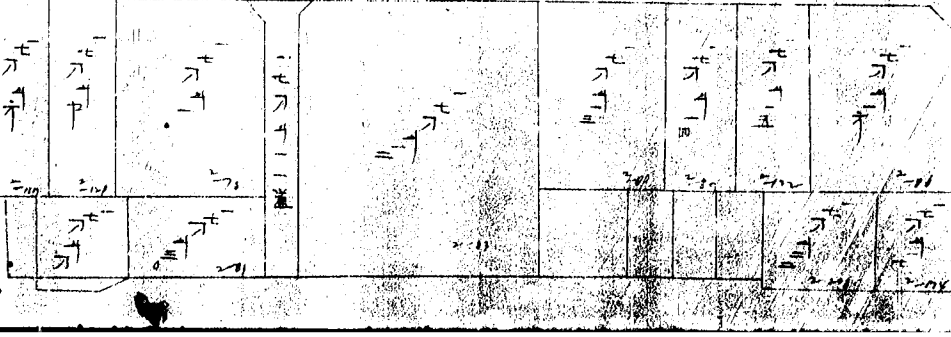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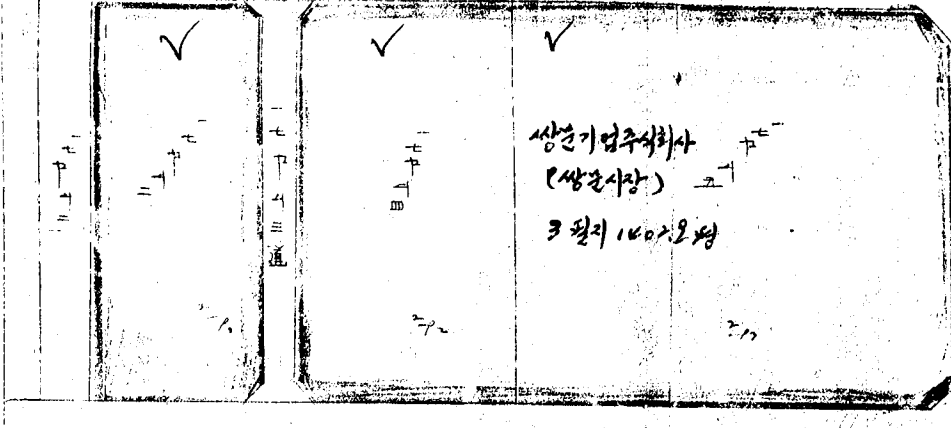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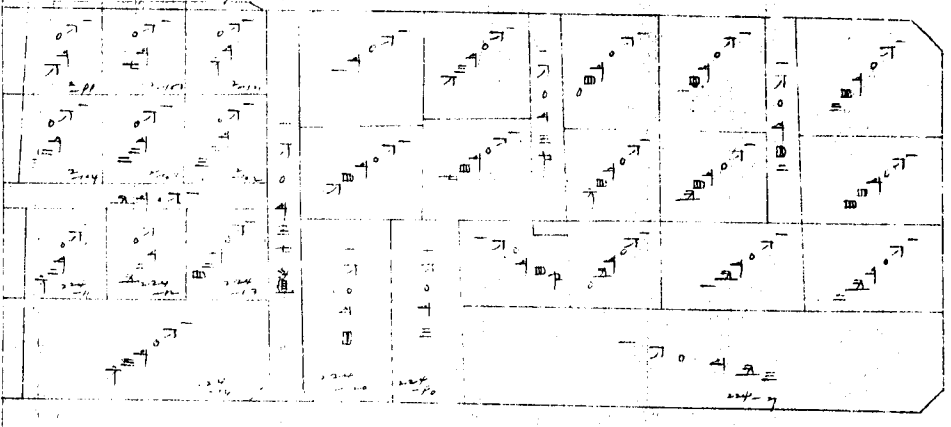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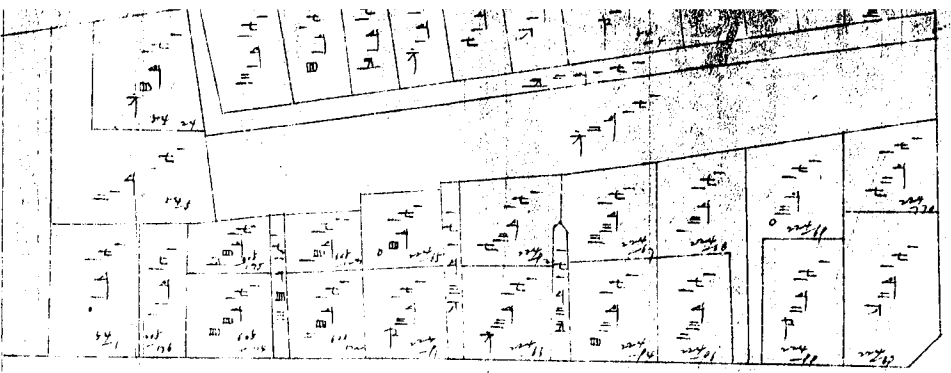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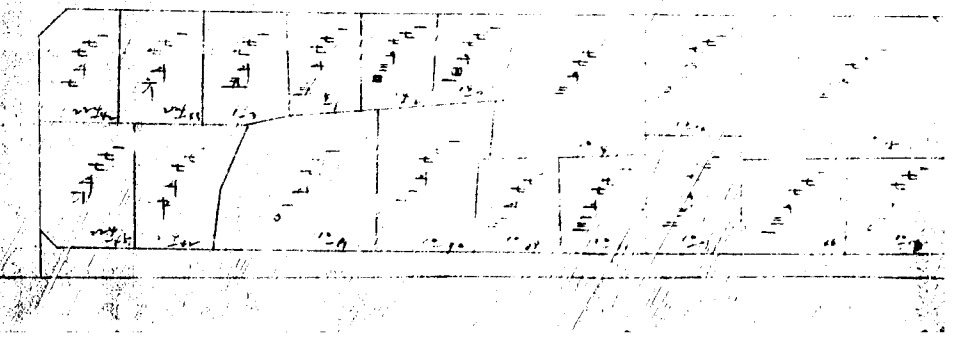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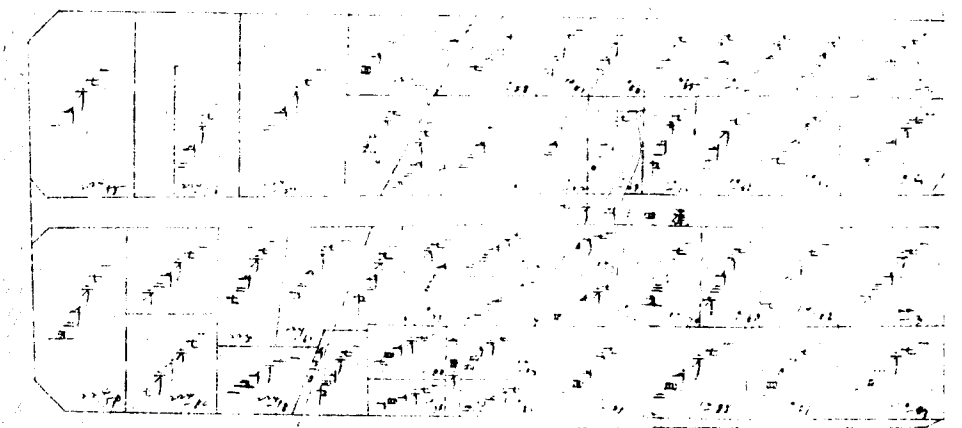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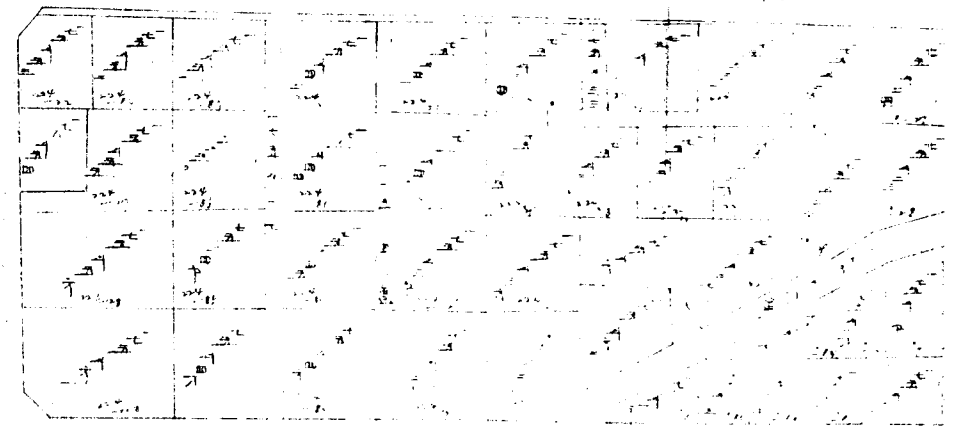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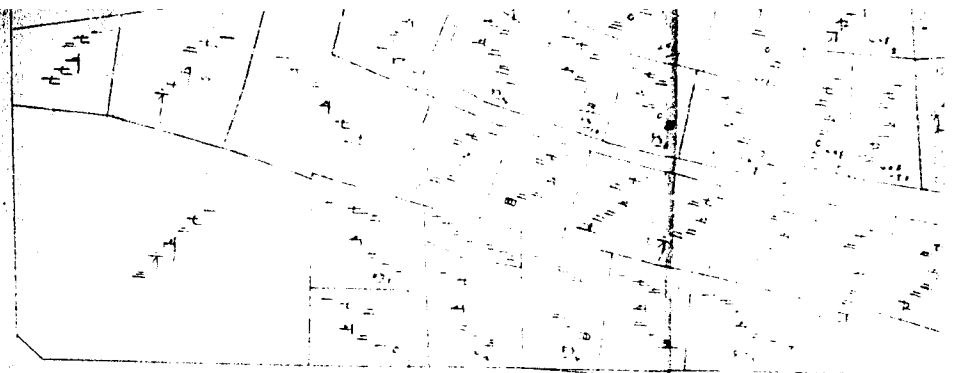


서울시	의	호
1975	2	10
삼	대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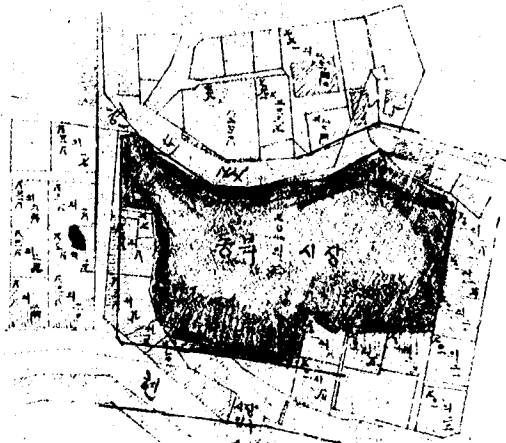
개단
 도로
 분수
 만
 세

1701

1970년 10월 10일
 대한지적청
 서울특별시



西曆一九七四年六月七日



서로
15
심

범례

- 2인
- 2인
- 2인

綜合測量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
TELE 2611
제39호

測量士 朴熙



1703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이
작성한 도시계획도면의
범례는 다음과 같다.
3. 縮尺 1/5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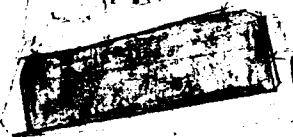
縮尺 1/500 之一

現況圖

大分特別市麻生区麻生町36-24f

以 大分特別市麻生区麻生町36-24f
中 256 号

永積門
永積寺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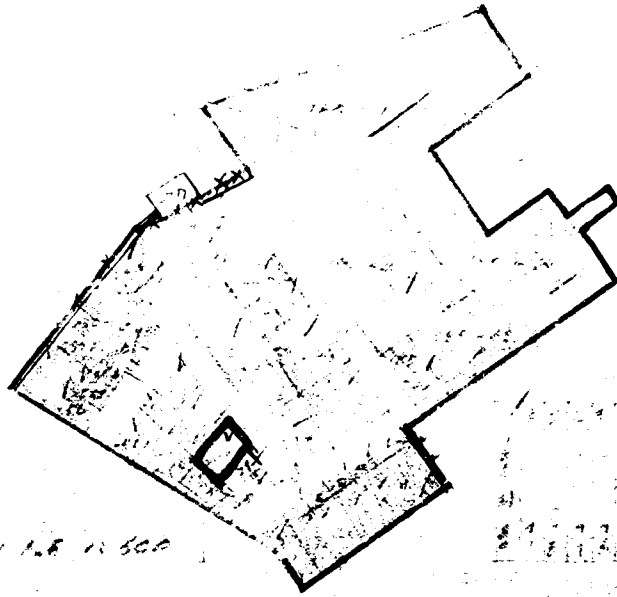
法人

大分特別市麻生区麻生町36-24f

大分特別市麻生区麻生町36-24f

1	69.64	28.1
2	90.425	26.1
3	23.8	0.1
4	52.54	59.6
5	92.7	11.5
6	32.57	1.66
7	6.72	
8	1.2	
9	2.7	
10	0.8	
11	0.8	
12	1.0	
13	2.125	
14	128.514	
15	22.125	
16	1.0	
17	1.0	
18	1.0	
19	1.0	
20	1.0	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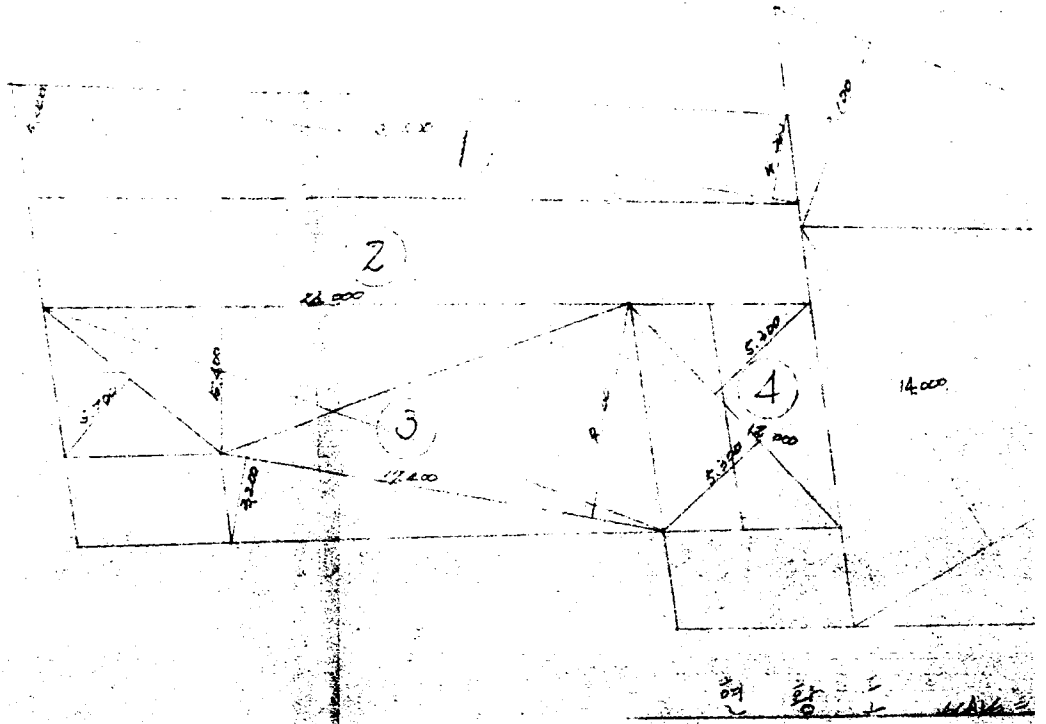


1.5 1.500

1	2	3	4	5	6	7	8	9	10
11	12	13	14	15	16	17	18	19	20

195 195 195 195

日期	时间	地点	内容	备注
1	11:30	101	101	101
"	"	102	102	102
"	"	103	103	103
"	"	104	104	104
"	"	105	105	105
"	"	106	106	106
"	"	107	107	107
"	"	108	108	108
"	"	109	109	109
"	"	110	110	110
"	"	111	111	111
"	"	112	112	112
"	"	113	113	113
"	"	114	114	114
"	"	115	115	115
"	"	116	116	116
"	"	117	117	117
"	"	118	118	118
"	"	119	119	119
"	"	120	120	120
"	"	121	121	121
"	"	122	122	122
"	"	123	123	123
"	"	124	124	124
"	"	125	125	125
"	"	126	126	126
"	"	127	127	127
"	"	128	128	128
"	"	129	129	129
"	"	130	130	130



구분	종	기	인	면	적
①	82-37			22	25 평
②					도 로
③	90-100			62	73
④	121-149			19	27
⑤	151-175			69	15
⑥	310-130			121	58
⑦					도 로
⑧	151-130			42	15
합					347.06 평

